

등록번호	정책기획담당관-812
등록일자	2015. 1. 16.
결재일자	2015. 1. 19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예산팀장	정책기획담당관	부구청장	구청장
권세호	나윤수	임근래	조인동	01/19 代조인동
협 조	주민자치국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토목과장	이경현 정상희 주옥련 김영철		

2015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



서 대 문 구
정책기획담당관

2015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

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'상저하고'(上底下高)의 경기변동을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I 추진 방향

-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연말 예산 집중집행의 낭비 및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
-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단축됨에 따라 연초부터 조기집행 추진 필수
 - ※ 익년도 1,2월 집행규모 : '12년(47억, 전체집행액의 1.88%), '13년(69억, 2.45%)
- 일자리창출, 서민생활안정, SOC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및 관리
-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우리구 주요 역점사업 상반기 추진

II 추진 개요

- 추진기간 : 2015. 1월 ~6. 30일까지
- 조기집행 대상 : 일반·기타특별회계, 기금(도시관리공단 별도)
 - 급여성 경비, 균분 집행 대상, 배상금 등 시기도래시 집행과목 제외
 - 인건비, 예비비, 사회보장수혜금, 공공운영비, 사회복지비 등
 - 시설비, 용역비, 자산취득비 등 집행효과가 큰 경비 위주
 - ※ 2015년 조기집행 대상 및 제외 항목 참조

□ 집행목표액 : 조기집행 대상액의 55%

- 조기집행 대상액 = 대상과목의 2015년 본예산 + 이월예산
- 회계별 집행목표액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회 계 별	예 산 액	집행대상액	집행목표액 (대상액×55%)	비 고
계		382,350	77,094	42,402	
본예산	일반회계	344,850	58,140	31,977	
	기타특별회계	16,812	6,229	3,426	
	기금	11,527	3,564	1,960	
이월액		9,161	9,161	5,039	추정금액

※ 이월사업 정산 확정 후(2015. 3월초) 대상액 및 목표액 조정

-2014년 추진결과-

○ 최종실적 : 338억원 집행, 목표액 422억원 대비 80.09% 달성

(단위:억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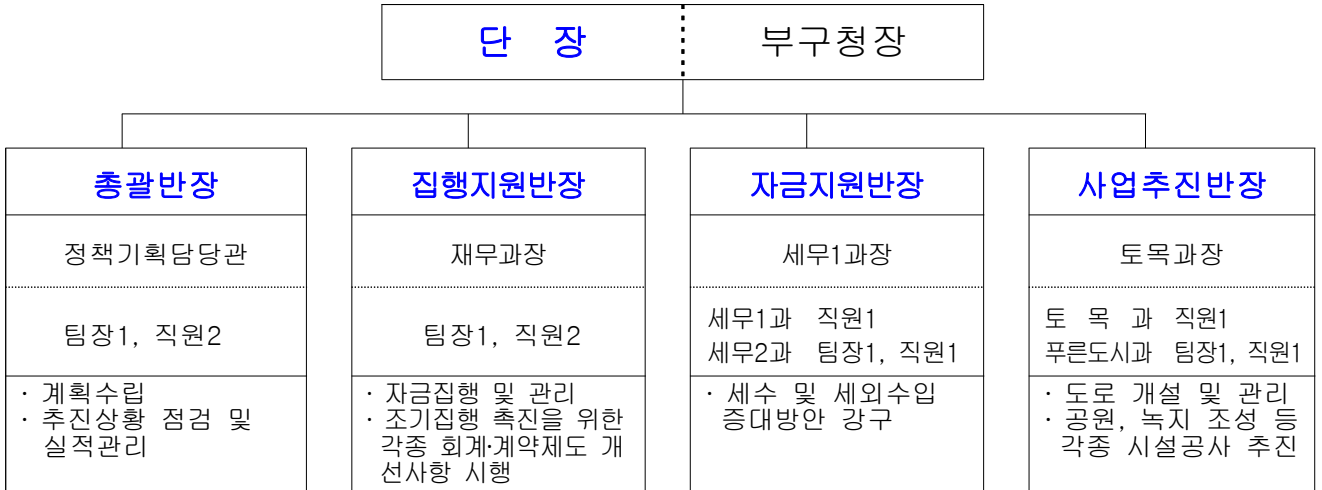
집행대상액	집행목표액	집행액	집행율(%)		비 고
			대상액기준	목표액기준	
781	422	338	43.27	80.09	서울시 집행률 83.58% 우리구 집행률 80.09% (25개 자치구 중 14위)

Ⅲ 세부 추진방안

□ 조기집행 추진단 구성 · 운영

- 구 성(단장 부구청장, 4개반)
- 운영기간 : 2015. 1월 ~ 6월 30일
 - 조기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, 자금운영 현황 분석·지원 등
 -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애로요인 제거 및 개선대책
- 근무방법 : 총괄반 상시, 기타반 필요시

【조기집행 추진단 구성(안)】



□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추진

- 중점분야 : 일자리 사업, 서민생활 안정사업, SOC사업
- 대상사업 : 국가 중점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있는 사업
- 관리방법 : 사업관리카드 작성, 실적 점검 및 부진대책 마련
- 기대효과 : 국비실집행률 제고 등 중앙·지방 재정집행의 상승효과

□ 행자부 조기집행과 연계 우리구 주요사업 집중관리

- 대상사업 : **시설비, 연구용역비, 자산및물품취득비 통계목**으로 편성된 '15년도 사업비
 - 서울시 예산편성 사업 및 동별투자사업 등 주요투자사업 집중 모니터링
- 관리방법
 - 토목·하수, 재해예방, 산림·녹지 등 주요사업 동절기전 공사완료 목표로 공정관리
 - 미발주 원인분석 후 추진 지연 및 문제점 사업 위주 대책보고(월 1회)
- 기대효과
 - 사업별 공정관리, 적기집행으로 조기집행 실효성 제고
 - 구민 주요 숙원사업 조기 완료

□ 재정 조기집행 촉진을 위한 개선제도 적극 활용

- 긴급입찰 제도의 적극적 활용 : 일반입찰(7~40일) ⇒ 긴급입찰(5일)
- 선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지급범위 확대
 - 계약기간 60일 미만도 선금 지급가능 → 기간 삭제

□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준비 철저

- 2015년 예산안 확정 즉시 조기배정 - 2015. 1. 02. 기 배정완료
- 부서별 목표액 설정 및 월별 집행계획 e호조 입력
 - 목표액 및 월별 집행계획 e호조 입력 완료 : 2015. 1. 21(수)한
- 최대한 1~2월 중 조기발주 계획 수립
- 용역발주를 위한 기술 및 디자인심사, 계약심사 등 1월 중 완료
-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시설공사는 해빙기 이후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
-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·용자심사, 구유재산관리계획 등 모니터링 실시

□ 집행계획에 따른 체계적 실적관리

- 부서별 목표달성을 위한 2015년도 조기집행계획 수립
- 민간 실집행액 병행 관리
 - 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최종 수혜자인 민간에 자금이 실제 집행될 수 있는 항목 중점관리
 - ※ 민간실집행대상 = [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] + [정책사업 중 이전사업비를 제외한 금액]
- 조기집행 대상사업 세분화 및 담당실명제 관리
 - 대상사업을 회계별, 부서별, 사업별, 예산과목별로 세분화하여

사업진행 상황 및 자금집행을 관리

- 부진사유 파악 및 향후 대책 마련 용이
 - 담당자의 책임성 강화
- 목표대비 집행실적 실시간(Real Time) 관리
- 집행상황 실시간 공개를 통한 집행실적 관리 및 진단

IV 행정 사항

-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제출 - 2015. 1. 21(수)한
 - e-호조 입력작업 완료 후 엑셀자료로 다운로드 받아 세부사업별 담당자명, 내선번호 기재
- 부서별 조기집행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- 2015. 1. 21(수)한
 - 부서별 목표달성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(기금포함) : **【첨부 1】**
- 조기집행 상황실 근무자 명단 제출 - 2015. 1. 21(수)한
 - 재무과, 세무1과, 세무2과, 토목과, 푸른도시과 : **【첨부 2】**

- 참 고 1. 2015년 조기집행 대상 및 제외 항목
2. 조기집행 관련 제도개선 현황('09년~)

- 첨 부 1. 부서별 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(제출서식) 1부.
2. 조기집행 상황실 근무자 명단(제출서식) 1부.
3. 2015년 조기집행 목표액(이월예산 제외) 1부.
4. 조기집행 e-호조 매뉴얼(사업부서 담당자용) 1부. 끝.

참고 1

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 및 제외 항목

구 분	2015년		
	집행대상	집행제외	제외사유
목 표 액	91.5조원		
100 인건비		100 인건비 전체 제외	
200 물건비	201-01 사무관리비 206 재료비 207-01 연구용역비 207-02 전산개발비 207-03 시험연구비	201-02~04 공공운영비 등 202 여비 203 업무추진비(기관운영, 정원가산 등) 205 의회비(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등) 204 직무수행경비 (직책급업무수행경비, 직급보조비, 특정업무경비)	·균분 집행 ·급여성 경비
300 경상이전	303 포상금 306 출연금 307-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-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-05 민간위탁금 308 자치단체등이전 309 전출금	301-01~04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301-06~07 민간인 국외여비 등 301-09, 11 행사실비 보상금 등 301-05 통장·이장·반장활동보상금 301-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-10 예술단원·운동부등 보상금 304 연금부담금등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5 배상금등 307-01 의료 및 구료비 307-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-06~09 보험금 등 307-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-11 사회복지사업보조 310~311 국외이전 등	·균분 집행 ·급여성 경비 ·시기도래시 집행
400 자본지출	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	407 국외자본이전	·외국지급 경비
500 융자및출자	501 융자금 502 출자금	-	
600 보전재원	-	-	
700 내부거래	-	-	
800 예비비 및 기타	-	-	

참고 2 조기집행 관련 제도개선 현황(2009년~)

구분	개요	개선 내용	지속여부	비고
집행 절차 단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 조기 확정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·계약 예산배정 前 계약체결 긴급입찰 적극 활용 개산계약 범위의 한시적 확대 매칭펀드사업 지원재원 우선확보시 차수계약 활성화 	일반 7~40일 ⇒ 긴급 5일 재해복구공사 ⇒ 필요시 지원재원 확보시 동일 회계연도내 1차 공사계약 가능	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종 료 지속 시행	실효성 미흡 시행령 개정완료('10.7)
자금 집행 방식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제 도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선금제도 적극 활용 선금 의무지급율 이하 신청 및 지급 가능 선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지급범위 확대 선금의 추가지급 허용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 세출예산 집행제한의 예외 	의무지급률 30~50% (계약기간 60일 미만도 선금 지급 가능 - 기간삭제) 발주자 직접지급	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통합 시행 종 료 지속 시행 종 료	'09 시범실시 '10. 전면실시 예규개정 기시행('10.10) 부작용 유발 부작용 유발
관계 부처 협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시배정 사업비 조기배정 지방교부세의 조기 배정 조기집행 미실시 사유중심 감사 		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	
세출 예산 구조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월예산의 조기 확정 지방채 추가발행 등 투자재원 확보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	민간이전경비, 보상금,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 제외	지속 시행 지속 시행 종 료	실효성 미흡
경기 부양 시책 발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층 관련경비 우선 지출 공사의 지역제한 확대(~13.3월) 사무용품 일괄 구입 등 추진 지방공기업을 통한 내수 진작 	종합공사 70억 → 100억 전문공사 6억 → 7억	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	